

## 약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약관명	변경전	변경후
	<신설>	<p>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1조 (신한 Gift카드 정의) ① 신한 Gift카드(이하 "Gift카드"라 합니다)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합니다)에서 발행한 무기명 선불카드로 카드 앞면에 표시된 일정 금액(이하 "권면가"라 합니다)만큼 사용하실 수 있는 카드(신한 모바일 Gift카드 포함)입니다. ② 「신한 모바일 Gift카드」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무기명 선불카드입니다. 신한 모바일 Gift카드는 모바일 Gift카드 상품별로 특별 제휴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제휴사 전용과 카드사에서 발행한 모바일 Gift카드 제휴사 전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휴사 범용으로 구분되어 발행됩니다.</p>	<p>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소지자"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신청한 후 카드사로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구매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④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⑤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구매한 선불카드로서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 전산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⑥ "충전"이란 선불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⑦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이란 카드사로부터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⑧ "소멸시효기간"이란 회원 등이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상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1 조 (회원) "회원"이란 본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에 온라인 또는 실물의 가입신청서를 통해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이하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2조 (Gift카드 구매) ① Gift카드는 카드사의 각 지점, 신한은행 영업점 등 카드사가 지정하는 공식 판매처 (이하 "판매처"라 합니다)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이외의 곳에서 구매 하실 경우 카드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Gift카드는 관계법령, 카드사의 규정에 따라 월별 구매하실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으며, 판매처에서 고객의 월 구매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p>	<p>제3조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① 회원 등이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지정판매처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발급 매수 및 발급자격을 카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를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제작비용을, 배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선불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의 발급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선불카드를 발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회원 등에게 부가서비스, 이용안내,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명 및 거래유형에 관한 목록,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8 조 (연회비 및 수수료) 회원이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카드 또는 특정기관과 제휴한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및 추가발급 내지 재발급 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수수료를 징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합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3 조 (카드의 유효기간, 재발급 및 소멸시효)</p> <p>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 월로부터 5년으로(카드 앞면에 기재), 유효기간 경과시 해당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p> <p>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할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에 충전, 사용, 환불 거래가 있고 해당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잔액을 이관하여 갱신 발급합니다.</p> <p>④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4조(선불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p> <p>①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 시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선불카드 표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p> <p>②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선불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p> <p>③ 회원 등이 소지한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동종의 카드(동종의 카드가 없을 경우 동종의 유사한 카드)로 교체 발급받거나, 잔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p> <p>④ 회원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선불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p> <p>⑤ 카드사는 선불카드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 등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교체발급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사가 회원 등의 휴대폰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4조 (Gift카드 이용)</p> <p>⑤ Gift카드의 유효기간은 판매월로부터 5년입니다. 단, 카드사 및 제휴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Gift카드에 표시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3조 (충전식 Gift카드)</p> <p>② 충전시 충전된 금액의 사용가능 기간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이며, 충전된 해당 Gift 카드의 유효기간(카드 전면에 표시)이 도래한 때에는 충전 누적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환불 받거나, 80% 미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이관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p>	<p>제5조(선불카드와 소멸시효)</p> <p>①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일로부터,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판매월(또는 충전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은 5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p> <p>②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5만원 이상의 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기 1개월 전까지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등 기부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p> <p>③ 제2항에 따라 기부예정 통지를 한 카드사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3 조 (카드의 유효기간, 재발급 및 소멸시효)</p> <p>② 카드사는 5년 이상 충전, 사용, 환불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선불카드를 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4조 (Gift카드 이용)</p> <p>① Gift카드는 잔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 <p>② Gift카드는 일시불 결제로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구매 및 현금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p> <p>③ Gift카드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단,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한 모바일 Gift카드는 카드사와 제휴한 가맹점(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문을 통해 공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p> <p>⑤ Gift카드의 유효기간은 판매월로부터 5년입니다. 단, 카드사 및 제휴사의 마케팅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Gift카드에 표시합니다.</p>	<p>제6조(선불카드의 이용)</p> <p>① 선불카드는 일시불 구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 등이 선불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② 선불카드 회원 등은 충전된 선불카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③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 시 카드사는 해당 선불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p> <p>④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p> <p>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선불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소지자의 피해를 카드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6 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p> <p>① 회원은 선불카드에 충전한 금액을 한도로 일시불 거래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p> <p>② 회원의 선불카드 이용시 충전금액에서 결제한 금액이 즉시 차감됩니다.</p> <p>⑤ 회원이 실물의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다른 기관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기프트카드약관</p>	<p>제4조 (Gift카드 이용)</p> <p>③ Gift카드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단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한 모바일 Gift카드는 카드사와 제휴한 가맹점(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상품안내문을 통해 공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p> <p>④ 카드는 Gift카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Gift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1. 비밀번호 5회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p> <p>2.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p> <p>3.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p>	<p>제7조(선불카드의 이용 제한)</p> <p>① 선불카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카드는 가맹점이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p> <p>② 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선불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이 제한된 가맹점을 고지합니다.</p> <p>1. 선불카드 특성상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무승인 거래(항공기 내 구매 등)의 경우</p> <p>2. 선불카드 상품 출시 시, 특정 기관과 제휴를 통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p> <p>③ 카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등의 선불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p> <p>1. 회원 등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p> <p>2. 카드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3.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가입 신청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독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문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p> <p>4.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p> <p>5.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비밀번호, CVC번호를 3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p> <p>6. 기타 카드 위조·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④ 선불카드가 전함에 따라 이용 정지된 경우, 카드는 경지사유 및 경지사실을 회원에게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소지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항 제2, 4, 5, 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p> <p>또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사유발생 당일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소지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드립니다.</p> <p>⑤ 회원 등은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는 회원 등이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선불카드약관</p>	<p>제 6 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p> <p>③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PG업체 등)과 카드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의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p> <p>④ 카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p> <p>1. 비밀번호의 오류입력 횟수 초과</p> <p>2. 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신고된 경우</p> <p>3.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p> <p>4.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p> <p>⑦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상품권을 발행하는 일부 유통사 및 공중전화, 비행기 기내판매,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영화/철도/고속버스 예매 등에 사용이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p>	<p>제8조(선불카드의 환급)</p> <p>① 카드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p> <p>③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p>
<p>기프트카드약관</p>	<p>제4조 (Gift카드 이용)</p> <p>⑨ Gift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카드는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은 해당 Gift카드 잔액으로 복원됩니다.</p> <p>⑩ Gift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취소시에는 영업일 기준 3~5일 이후에 사용한도가 복원됩니다.</p>	
<p>선불카드약관</p>	<p>제 6 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p> <p>⑥ 회원이 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는 승인 및 매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인 취소는 취소 즉시, 매출 취소의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 이후에 회원의 카드에 재충전하여 드립니다.</p>	
<p>기프트카드약관</p>	<p>제3조 (충전식 Gift카드)</p> <p>① 충전식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③ Gift카드 충전금액은 고객의 Gift카드 월 구매한도에 포함됩니다.</p>	<p>제9조(선불카드의 충전)</p> <p>①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 충전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입니다.</p> <p>② 카드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p>
<p>선불카드약관</p>	<p>제 5 조 (카드의 충전)</p> <p>① 회원은 충전한 금액 범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② "충전"이라 함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향후 사용할 금액을 해당 카드에 부여된 가상계좌에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포인트 결제로 해당카드에 사용 가능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최대 충전가능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규정에 따릅니다.</p> <p>③ 회원은 인터넷, ARS 등을 이용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충전할 수 있습니다.</p> <p>④ 회원은 충전시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에 설정한 연결계좌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착오로 인해 타 계좌로 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도록 합니다.</p> <p>⑤ 카드는 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p>	

<p>기프트카드약관</p>	<p>제4조 (Gift카드 이용)          ④ Gift카드 잔액은 판매처, 카드사 상담센터(1544-7500, 1566-7500) 및 홈페이지, 신한은행 ATM, 사용자 매출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일부 매출전표에서는 잔액 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제10조(선불카드의 잔액 확인)          선불카드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클센터          2. 매출전표, 단,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3.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단,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등의 경우에 한함</p>
<p>&lt;신설&gt;</p>		<p>제11조(선불카드의 소득공제)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선불카드 이용금액          2. 환불금액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능한 선불카드 이용금액</p>
<p>기프트카드약관</p>	<p>제6조 (Gift카드의 재발행 및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카드사는 Gift카드를 재발급하거나 Gift카드의 잔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Gift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카드 결함 등으로 인하여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 Gift카드의 잔액이 발행 권면가의 20% 이하인 경우          4. 기타 카드사가 환불심사를 하여 환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Gift카드 잔액이 발행 권면가의 20%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환불 받을 수 있으며, ①항 1,2,4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카드지점 또는 은행영업점에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한카드 홈페이지 - 신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선입금액으로 처리하거나 본인 계좌로 24시간 환불 가능하며, 신한 신용카드 선입금액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1~2일 소요됩니다.          2. 신한카드 지점 : 평일 업무시간(09:00~16:00)중 환불 받을 Gift카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점 방문시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환불 가능합니다.          3. 신한은행 영업점 : 평일 업무시간(09:00~16:00)중 환불 받을 Gift카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시 신한은행 계좌이체 또는 현금환불 가능합니다.          4. 신한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 평일 자동화기기 운영시간(09:00~22:00)에 해당 Gift카드 투입 후 '기타업무 &gt; Gift카드 환불 &gt; 환불신청 시 신한은행 또는 타행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5. ARS환불 : 신한 신용카드 회원인 경우 ARS(1544-7500/1566-7500 3번&gt;3번) 환불 신청시 신한 신용카드 선입금액으로 선입금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③ 신한 신용카드 회원인 경우 신한 모바일Gift카드(YES24, LiBRO 등 제휴사 범용에 한함)의 잔액이 발행 권면가의 40% 이하인 경우 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으로 전환하는 Swap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Swap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Gift카드 실물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훼손 등으로 카드 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Gift카드 재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신분증 및 해당 Gift카드 실물을 지참하셔서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한 모바일 Gift카드의 환불 및 재발행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12조(선불카드의 환불)          ① 회원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클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선불카드 소지자의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잔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p>
<p>선불카드약관</p>	<p>제 7 조 (환불)          ① 회원은 카드잔액에 대하여 카드사 홈페이지, ARS, 카드사 고객센터, 신한은행 창구를 통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잔액 환불은 환불가능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하며, 환불가능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합니다.          1. 현금 입금 및 체크카드로 충전한 경우 충전 잔액          2. 신용카드 신용구매로 충전한 경우, 충전 누적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3. 최초 잔액 충전계좌로 현금 입금하고 선불카드간 잔액을 이체한 금액          ③ 카드사는 회원의 환불요청에 대한 심사 후, 회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 환불 또는 신한은행 창구에서 현금 환불하며, 이체 환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카드사가 부담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8조 (Gift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따른 책임)</p> <p>① 고객이 Gift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 당시의 Gift카드잔액에 대해서 카드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p>	<p>제13조(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p> <p>① 회원 등은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며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p> <p>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시 보상하도록 합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10 조 (카드의 분실, 도난신고의 보상)</p> <p>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조에 따릅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p> <p>③ 회원은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li> <li>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li> <li>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li> <li>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항과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li> <li>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li> <li>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li> <li>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명식 선불카드의 회원</li> <li>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단, 소지자의 정보 등록 후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li> <li>기타 분실·도난 시 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li> </ol> <p>③ 제2항에 따라 분실·도난 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p> <p>④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선불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 등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상신청 시, 소지자가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한 시점이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지자의 정보가 등록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5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p>⑤ 회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원 등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li> <li>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기명식 선불카드의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li> <li>회원 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항과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li> <li>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li> <li>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li> <li>회원 등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li> </ol>
기프트카드약관	<p>제7조 (Gift카드의 위·변조 등에 따른 책임)</p> <p>① 카드사는 Gift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드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객이 Gift카드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li> <li>제 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Gift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Gift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li> </ol>	<p>제14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p> <p>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조되거나 변조된 선불카드의 사용</li> <li>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선불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선불카드의 사용</li> <li>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li> </ol> <p>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li> <li>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 등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li> <li>카드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li> <li>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li> </ol> <p>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p> <p>③ 회원 등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9 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p> <p>① 카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li> <li>카드의 대여, 양도, 보관위임, 이용위임, 담보제공 등으로 위·변조가 발생한 경우</li> <li>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위·변조 사고 또는 이들이 관련하여 발생한 위·변조 사고</li> </ol> <p>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p>	<p>제15조(변경사항의 통지)</p> <p>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②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 중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 회원 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13 조 (변경사항의 통지)</p> <p>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전자우편(E-MAIL)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제15조(변경사항의 통지)</p> <p>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②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 중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p> <p>③ 회원 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p>

	<p>&lt;신설&gt;</p>	<p>제16조(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p>기프트카드약관</p>	<p>제9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약관의 내용을 변경 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잔액알림SMS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단문메세지서비스(SMS)로 개별 통지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소지자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소지자가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제17조(이용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지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카드사가 유효한 휴대폰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한함)로 개별 통지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원 등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 등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p>
<p>선불카드약관</p>	<p>제 15 조 (효력 및 변경) ①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 합니다. ②전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 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선불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④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3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3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부칙 제15조 제2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p>	
<p>기프트카드약관</p>	<p>제11조 (준용규정)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p>	<p>제18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p>
<p>선불카드약관</p>	<p>제 16 조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관계법령 및 기타 상관례에 따릅니다.</p>	

선불카드약관	<p>제 2 조 (카드의 관리)</p> <p>①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 관리 소홀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p> <p>② 회원은 실물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p> <p>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으로 인한 갱신 전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p> <p>④ 전 각 항을 포함하여 기타 카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p>	<p>제19조(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p> <p>① 회원은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p> <p>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p>
<신설>		<p>제20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p> <p>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총잔액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5조 (Gift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p> <p>① 고객은 Gift카드를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사용등록이라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p>	<p>제21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p> <p>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p>
기프트카드약관	<p>제5조 (Gift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p> <p>② 인터넷 사용등록을 마친 Gift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Gift카드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Gift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제해야 하며, 해제처리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카드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p>	<p>제22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p> <p>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p>
<신설>		<p>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제2호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갱신한 소지자에 대해 적용됩니다.</p>